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망통보제의 도입 〉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59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사망사실의 통보(안 제89조의2 신설)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사망의 신고 및 통보 관련 규정	3
다. 검토의견	5
2. 사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 등(안 제89조의3 및 제89 조의4 신설)	11
가. 개정안의 내용	11
나. 검토의견	12
3. 관계기관 의견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사망은 연금 수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현행법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동거가족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에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망사실의 통보(안 제89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이 있는 경우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정보(사망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망 연월일시 및 장소)를 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기재하고(안 제89조의2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안 제89조의2제2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89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신설>	<u>제89조의2(사망사실의 통보) 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이 있는 경우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망정보”라 한다)을 진단서 또는 검안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u> <u>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u> <u>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u>

현행	개정안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사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사망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장소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 사망의 신고 및 통보 관련 규정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10절(사망과 실종)에서는 사망의 신고 및 통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4조 및 제85조).

또한,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사형·재소 중 사망, 무연고자 등의 사망 및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공서, 교도소장, 시장등 및 경찰공무원 등이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에 관한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

한편,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제122조).

< 「가족관계등록법」 상 사망 신고 및 통보 관련 규정 >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 ①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가 있는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이 있는 경우 사망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사망정보를 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읍·면 장에게 사망정보를 통보하도록 하여 출생사실 통보제¹⁾와 유사한

1)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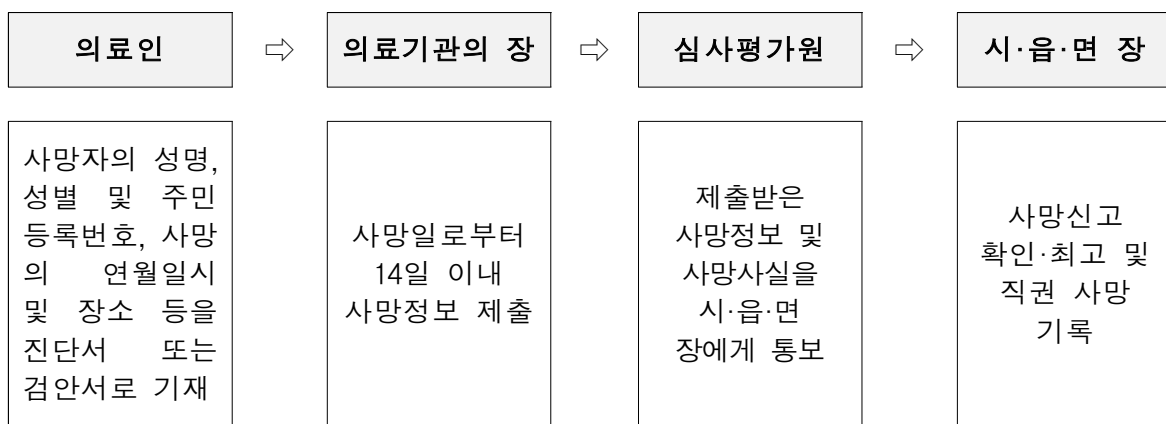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제도를 사망인 경우에도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사망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사망사실 통보 절차 >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사망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비의 부당집행, 주민등록 도용·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증명 부정발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²⁾.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이정환, “출생신고 이어 사망신고 의무화…의료기관 행정부담 ↑”, 2022년 2월 5일자 기사(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이 8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보훈급여금 1억 200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례 등)

김남규, “최근 5년간 출생/사망사실 신고안하다가 과태료 처분된 대상자 13만명”, 2021년 3월 16일자 기사

특히 통계청의 “출생·사망 통계(2023)”에 따르면 사망 장소별 사망자 수 비중에서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등)은 75.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³⁾, 의료기관에서 사망이 있는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게 사망정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국가의 사망정보 파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사망이 있는 경우 의료인에게 사망정보를 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인바, 의료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의 필요성 측면과 의료종사자들의 부담 가중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18년~2020년까지 수급자 확인(실태)조사』에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발생금액은 6천여만원에 달함)

3)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 2024.2.28.

<사망 장소별 사망자 수 비중>

(단위: %, %p)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22년대비 증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의료기관	71.5	73.1	74.6	74.9	76.2	76.2	77.1	75.6	74.8	74.8	75.4	0.6
주택	17.7	16.5	15.6	15.3	14.4	14.3	13.8	15.5	16.5	16.1	15.5	-0.6
기타*	10.8	10.3	9.7	9.8	9.4	9.5	9.1	8.8	8.7	9.1	9.1	0.0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에게 1차적 신고의무를 일임함이 현행법의 태도임을 고려할 때 고인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는 의료기관에 사망사실 통보를 법률로 강제함은 과도한 입법이고, 사망신고 확인을 위한 목적이 라면 정부의 후속조치나 친족에 대한 계도·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사망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유가족들이 의료과실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해당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사망사실 통보를 한 경우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유발할 것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 개정안 제89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사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사망정보(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등)를 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의료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재 의무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의료법」 제2조제1항4)에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7조5)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4)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5)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등에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단서나 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하고 있음⁶⁾.

따라서 「의료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사망이 있는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사망정보를 기재하는 의무 주체의 범위를 의료인 전체로 할 것인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제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 제89조의2제1항에서는 사망정보를 기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현행법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제1항7)에서는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6)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7)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사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 등(안 제89조의3 및 제89조의4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시·읍·면의 장이 의료기관 장의 사망정보 제출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받은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에 대한 신고가 되었지는 확인하고,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자인 동거친족에게 최고하며, 최고기간 내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89조의3(사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 ① 제89조의2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89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9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

현행	개정안
<신설>	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신고 확인, 사망신고 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시·읍·면의 장은 제89조의3에 따른 등록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 제89조의3 및 제89조의4은 시·읍·면 장이 의료기관 장의 사망정보 제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있어 사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 등에 관한 사항과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현행법상 출생사실 통보제에 있어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제44조의4)과 자료제공의 요청(제44조의5)에 관한 사항을 사망사실 통보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도입하여 사망정보 통보 이후의 사망 신고에 관한 행정적·절차적 사항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음.

<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기록 관련 규정 >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 제89조의3제1항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사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현행법 제84조제1항⁸⁾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

8)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신고기간(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내에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개정안은 제89조의3제1항에서 사망신고 관련 확인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현행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 확인 절차와 유사하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기산점이 출생일로 명확한 반면⁹⁾, 사망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 수 없는 시·읍·면의 장으로서 신고기간 내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련 사항을 고려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 개정안 제89조의3제2항에서는 시·읍·면의 장이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사망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고 대상의 확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즉,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시·읍·면의 장의 최고 대상이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로 그 대상의 확정이 용이한 반면,

개정안에 따른 사망신고의 경우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즉, 동거하는 친족이 최고의 대상이 되어 친족¹⁰⁾ 해당 여부 및 동거(한 집에서 공동의 생활을 유지) 여부 모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최고의 대상이 확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고 대상을 결정할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89조의3제3항에서는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 기록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고 대상이나 최고 시기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제89조의3제2항(사망신고의 최고)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함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을 통하여 지자체장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신고의무자가 연금부정 수급 등을 목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재조치의 강화, 미신고로 인한 수급 적발시 부정이익 환수조치 강화 등의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 심사평가원, 지자체 등 통보 관련 기관에 대한 추가부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사망신고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①개정안 제89조의2(사망사실의 통보)에서 사망통보를 할 의료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②제89조의3(사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 규정의 경우 사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인 동거친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당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망신고 기간 내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최고한 후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사망을 기록하는 규정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